

대규모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절차



고종섭

1.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제도의 도입 배경

국가경제의 발전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도시는 과밀화되고, 광역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되어,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의 교통계획으로는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에서는 대도시와 주변 인접지역을 하나의 교통권역으로 하는 대도시권역을 설정하고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7년 4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특별법(이하 “광특법”이라 칭함)」을 제정하고,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90년대말 용인 등 대도시 주변에서의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개발이 집중되면서 교통처리대책 부재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회와 정부에서는 '01년 1월에 「광특법」 제7조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규정을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고, 제11조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개발사업

에 따른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을 직접 확충하거나,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II.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 및 수립시기

『광특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의 자료제출요구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하는 사업은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대규모개발사업』으로서, 여기에서 대도시권은 광특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등 5대 도시권을 말한다. 그리고 대규모개발사업이란?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10개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13개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본 규정에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에 대한 해석상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유통단지 및 관광단지 사업은 수용 인구 또는 인원 보다 이용인구가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용인구가 수용인구보다 많은 특성을 갖는 사업인 경우에는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이용인구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특법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

권역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진해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원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금산군·연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청원군·옥천군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승인 이전,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실시계

획 승인 이전까지로 규정하는 등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과 교통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 및 수립시기〉

근거법령	사업	수립시기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승인 이전까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수립 이전까지
관광진흥법	관광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승인 이전까지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계획법	유원지설치사업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
온천법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
자연공원법	공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자연공원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 이전까지 - 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자연공원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이전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이전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복합단지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이전까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 이전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조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절차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특법 시행령 제9조4항에 의거 해당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면, 사업시행자는 용역 등의 방법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과 관련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시·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업무담당자는 관련 자료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고, 교통개선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 협의를 거치게 되는 관련 기관으로는 사업지가 위치한 시·군, 인접한 시·군 및 시·도가 해당되며,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 확충계획과의 상충 여부 등을 협의하기 위해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철도공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교통개선대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및 해당지역의 교통정책과의 조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지자체연구원 등과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며, 개선대책에 대한 의견이 관련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한 시·도지사의 방침을 득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건설교통부

의 해당업무 담당자(생활교통본부 광역교통정책팀)는 심의 요청받은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해 건설교통부 내부 관련 본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서협의하고, 지침 제23조에 의거 검토작업반을 구성하여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에 의거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를 검토하게 된다. 국책연구원의 연구원 및 교수 등 교통전문가 7-10여명으로 검토작업반을 구성하고, 보고서 배포 후 회의를 통해 검토작업반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개선대책(안)의 적절성여부를 심의 받는다.

검토작업반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광역교통실무협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광역교통실무협의회는 시·도의 건설교통분야 국장급 공무원과 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후 최종적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특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 등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통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실무협의회 및 본 위원회 심의에 각각 20~30일 정도 소요되며, 검토작업반을 거쳐 본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기까지 최소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실무협의회와 본 위원회 심의는 대부분 서면심의로 가름하여 오고 있으나,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경우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대면심의로 하고 있다.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를 요청한 시·도지사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 및 관련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일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과정이 완료된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절차〉

	업무흐름	업무내용	관련법령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안) 마련	개선대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도지사)	• 해당 시, 도지사는 개선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령 제9조 4항
	관련자료 작성 (시행자)	•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에 제시된 작성기준에 의해 관련자료 작성	지침 제2장
	관련자료 제출 (시행자⇒시·도지사)		
	관련기관협의 (시·도지사⇒관련기관)	• 관련기관 : 사업예정지와 인접한 시·군 및 시·도, 해당지역의 도로 및 철도와 관련한 지방국토관리청, 철도시설관리공단, 철도공사 및 해당지역의 지자체연구원 등	
대도시권 광역 교통 위원 회 심 의	심요청 (시·도지사⇒건교부장관)	• 시행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개선대책을 수립한 시, 도지사는 건교부장관에게 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	법 제7조 1항
	관련 부분 협의 (광역교통정책팀 ⇒관련 실, 국)	• 관련부서 : 기반시설본부, 주거복지본부 등 • 해당 사업에 따라 관련 실국(산업단지의 경우 국토정책국) 추가	
	검토작업반 검토 (광역교통정책과)	• 건교부 장관은 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전문적, 효율적 실무검토를 위해 개선대책전담반 구성 • 전문가(학계, 연구기관)와 관련시도 공무원 및 관련실국 직원으로 구성된 검토작업반에서 검토	지침 제3장 23조
	상 정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협의회	•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관계행정기관 및 시, 도 국장급, 민간전문가 등 40여명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 의장 : 건교부광역교통정책실장 • 관련부처 및 관계시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함	업무편람
상 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건교부장관), 부위원장 1인(기획예산처차관)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	법 제9조	
심 의 결 과 통 보	통보 (건교부⇒시, 도지사)	• 건교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7조 2항
	통보 (시, 도지사⇒사업시행자 및 관련기관)	※ 대규모 개발사업(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인구 2만인 이상)이 시행되는 당해 시, 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건교부장관이 확정한다.	